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8. 9. 28. 제출되어 10. 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문화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의 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대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취약계층의 정의 추가 (안 제2조)

○ 어린이의 정의 추가 (안 제2조)

○ 노인의 정의 추가 (안 제2조)

○ 장애인의 정의 추가 (안 제2조)

○ 안전용품 보급 대상 및 범위를 안전취약계층으로 구체화 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 동 조례 개정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문화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의 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대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의 안전취약계층을 조례 제2조 제7호에 신설하고, 제7조 안전도시 사업에서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용품 보급 대상 및 범위를 안전취약계층으로 구체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8. 9. 28. 제출되어 10. 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계획 변경에 따른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기존의 10분의 2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기정액 4,323,752천원 대비 약 698% 증가한 30,177,145천원으로 계획 변경됨.

○ 세부내용

- (기정) 2018년 예치금 : 2018년도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 (변경) 2018년 예치금 : 2018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기준)

☞ 정기예금(13개) 263억원 합산 누락

3. 기금운용현황

○ 총괄현황

(단위: 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가)		2018년도 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마)=(가)+(라)
		수입(나)	지출(다)	증감 (라) = (나)-(다)	
기정(A)	26,274,013	4,323,752	1,657,300	2,666,452	28,940,465
변경(B)	27,530,753	4,323,752	1,677,360	2,646,392	30,177,145
증감(B-A)	1,256,740	-	20,060	△20,060	1,236,680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 예산과목	기정 예산액	변경 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5,981,052	31,854,505	25,873,453	
전 입 금	3,923,458	3,923,458	-	
보 조 금	61,360	61,360	-	
예치금회수	1,657,300	27,530,753	25,873,453	
이자수입	338,934	338,934	-	

○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 분 / 예산과목	기정 예산액	변경 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5,981,052	31,854,505	25,873,453	
비융자성사업비	1,657,300	1,677,300	20,000	
예 치 금	4,323,752	30,177,145	25,853,393	
기타지출	-	60	60	

4. 검토의견

○ 재난관리 기금을 이용하여 재난예방 사업 및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기정액 4,323,752천원 대비 약698% 증가한 30,177,145천원으로 변경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10분의 2를 초과함에 따라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금관리에 있어 기금 지출 후 남은 전년도 총액과 당해 수입인 전입금, 이자, 도비 등 세입과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당해 세입만을 합산하고 전년도 지출 후 남은 총액을 합산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으로 향후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2018년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하여 재난예방사업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대상 :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 지원사업, 재난예방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 내진성능평가 및 안전진단 용역 등
○ 사업예산 : 1,677,360천원

■ 계획 변경사항

▶ 기금수입계획 변경

(단위 : 천원)

사업명(산출내역)	수 입 액		증 감	사 유
	기정	경정		
예치금 회수	1,657,300	27,530,753	25,873,453	결산에 따른 2017년도말 조성액 변경

▶ **기금지출계획 변경**

(단위 : 천원)

사업명(산출내역)	지출액		증감	사유
	기정	경정		
시립어린이집 정밀점검 (내진성능평가 포함)용역	-	20,000	20,000	내진설계 미적용된 노후건물 안전성검토
2016년도 도비보조금 이자 반환금	-	60	60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사업 도비보조금 이자액 반납(59,450원)
예치금	4,323,752	30,177,145	25,853,393	사업비 변동에 따른 예치금 조정

기대효과

○ 내진설계 미적용된 노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지진 재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8. 9. 28. 제출되어 10. 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정부합동평가 관련 안산시 규제개선 조례에 해당되어, 상위법령보다 강제하는 조례 조문을 조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위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춰 용어 및 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59조).

○ 상위법령 보다 강제하는 조항 삭제 및 정비(안 제4조의2, 안 제33조, 안 제36조, 안 제60조).

○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 삭제 및 정비(안 제4조, 안 제11조, 제13조, 제14조, 안 제20조, 안 제32조, 제39조, 제6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하여 안산시 규제개선 조례에 해당하여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춰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보다 강제하는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유재산 조례는 공유재산 법령상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법령에 위임된 사항 위주로 조문을 개정 하였고,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순화하여 용어 및 조문을 정비 하였으며,

○ 상위법령 보다 강제하는 조항과 중복된 조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등은 상위법보다 규제하는 내용이어서 개정하였으며

○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부채납의 원칙,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신탁의 종류, 변상금의 종류 등에서는 관계법령 및 시행령에서 중복된 조항으로 삭제하여,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맞게 정비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8. 10. 2. 제출되어 10. 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2018년 12월 31일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점차 변화하고 있는 엘리트체육의 지원방향도 다변화 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3조)

-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엘리트체육의 다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을 운용하려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 하여야 하고,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인 5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어 기한연장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8. 9. 28. 제출되어 10. 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2018년 12월 31일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관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3조의2)

3. 검토의견

○ 동 조례 개정안은 2013. 10. 31일 개정 시행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그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우리시 동 조례 제정 이후 관리중인 기금은 2018. 8월말 현재 12개 부서 14개 기금 2,191억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개별기금의 운용 관리, 예탁금, 이자지급, 배정계획 등 통합관리 중에 있음

○ 기금운용을 총괄부서에서 통합함으로써 각 기금 관리부서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위원회 간소화를 도모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운영 유지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등 통합관리기금 운영에 따른 성과가 상당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8. 9. 28. 제출되어 10. 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법령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존속기한 및 심의대상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고 자 함.

2. 주요내용

○ 용역과제심의 위원회 영구 운영을 위한 존속기한 삭제(안 제5조)

○ 「법령에 따른 의무 시행 용역」을 예산부서 실무심의로 대체하여 행정 효율 향상(안 제7조)

○ 「행정업무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역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확대 공개하여 행정기관 간 협업 촉진(안 제20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존속기한 및 심의대상을 정비하여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 첫째 안제5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용역의 사전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용역발주 및 예산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지속운영을 위해 계속하여 존치시켜야할 사유가 있어 존속기한을 삭제 하였으며

○ 둘째 안제7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용역의 경우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으로 과업내용 및 용역비의 경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가 가능하여 심의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하여, 안건 축소 시 비 법적 용역에 대한 내실 있는 용역과제심의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셋째 안제20조는 "행정업무의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역결과물을 시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8. 9. 28. 제출되어 10. 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 없는 조항 삭제 .

2. 주요내용

○ 제17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삭제 : 등록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과도한 규제로 삭제

3. 검토의견

○ 동 조례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되어온 심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설치·운영은 상위법령인「유통산업벌전법」에 근거 없이 설치한 위원회임.

○ 2017년 9월말 기준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규제와 지원제도를 파악하는 지자체별 경제활동 친화성 16개 분야 조례 및 실적 조사에서 대규모점포 등록 시 심의위원회 운영 여부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안산시만 유일하게 운영하여 과도한 규제로 심의위원회 삭제 필요성을 제기함.

○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도 동조례 제8조 「안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제14조 각항에 따라 시장은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하고, 등록을 제한할 수 있어 협의회가 등록심의 위원회 역할을 함에 따라 동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8. 9. 28. 제출되어 10. 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 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안 제2조~제4조)

○ 임시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관리 (안 제5조~제6조)

○ 상인회의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시설물 소유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 시설물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와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부칙 제2호에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

나, 법은 2013년 5월 28일 부칙을 삭제, 같은 해 11월 29일 시행되었고, 조례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자동 폐지되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서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하였고,

○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와 법에서 규정한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포함될 내용을 담고 있어

○ 상위법령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8조 시설물의 소유권에서는 법제11조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은 법제65조의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이

- 법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은 상인조직 또는 다른 시장관리자가

- 법제19조의7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인 상권관리기구 등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 안 제8조제1항제2호, 제2항, 제3항의 "상인조직"을 "상인조직 등"으로 표기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8. 10. 2. 제출되어 10. 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안산시의 대표성 있는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의 대표가 지속적으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민선7기의 중점적인 정책과제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의·의결 기능 구체화

○ 다양한 노사관계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위원 정수 증원

○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삭제하여 법체계 정비

2. 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연임 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는 내용의 조항 신설(안 제3조제3항)

○ 상위법(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현행 제4조 삭제

○ 인적 자원개발과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정책

사항을 협의·의결(안 제4조제2호) 기능 구체화

○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에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변경(안 제8조제2항)

○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을지급 할 수 있다(안 제10조)

3. 검토의견

○ 동 조례 개정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안산시의 대표성 있는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의 대표가 지속적으로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민선7기의 중점적인 정책과제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의·의결 기능 구체화와 다양한 노사관계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위원 정수 증원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 제2항의 협의회 위원의 임기사항 관련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단체간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9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9. 28. 제출되어 10. 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3개 부서 4개 사업(출연금 6,687,206천원)에 대하여 출연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적 요	부서명	출 연 금				비고
		계	인건비	사업비	기타	
총 계	4개 사업	6,687,206	2,642,252	3,635,065	409,889	
1.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발전기금	세 정 과	73,406	0	0	73,406	
2.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지역경제과	1,000,000	0	1,000,000	0	
3.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교육청소년과	1,180,000	108,000	1,072,000	0	
4.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교육청소년과	4,433,800	2,534,252	1,563,065	336,483	

○ 세부내용

1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발전기금

가. 지원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재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나. 필 요 성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지방세의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그 밖에 지방세 발전과 세정 운영을 위한 용도

다. 지원단체 : 한국지방세연구원

라. 출 연 금 : 73,406천원【(전전년도보통세 결산액) 489,376,507천원×0.015%】

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주 요 내 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계		73,406	67,144	6,262	
인건비					
사업비					
기 타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발전기금	73,406	67,144	6,262	

2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가. 지원근거 :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나. 필 요 성 : 담보제공 능력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성을 원활하게 하여 자금난 해소

다. 지원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라. 출 연 금 : 1,000,000천원 (2,000,000원×500개소)

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주 요 내 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계		1,000,000	1,000,000	0	
인건비	-	0	0	0	
사업비	▪ 대 상 : 안산시 관내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신용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 사업기간 : 출연일로부터 자금소진시 까지 ▪ 출연금액 : 10억원 ▪ 지원규모 : 100억원 (출연금액의 10배) ▪ 한 도 액 : 업체당 2천만원 한도 보증서 발급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1,000,000	1,000,000	0	
기 타	-	0	0	0	

3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가. 지원근거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나. 필 요 성

○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 확대 운영

○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각지대 및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2

다. 지원기관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라. 출 연 금 : 1,180,000천원

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주 요 내 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계		**1,180,000**	1,180,000	0	
사업비	장학사업	**1,017,000**	1,017,000	0	
	청소년활동사업	**20,000**	50,000	△30,000	
	지역인재 지원 사업	**35,000**	20,000	15,000	
기본경비	인건비 및 사무국 운영비	**108,000**	93,000	15,000	

4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가.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경비)

나. 필 요 성 :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함.

다. 지원기관 :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라. 출 연 금 : 4,433,800천원

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 요 내 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합 계			4,433,800	1,972,020	2,461,780	
재 단 사무국	소 계		3,106,560	0	3,106,560	
	인력운영비	급여, 제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급여	2,534,252	-	2,534,252	
	기본경비	복리후생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경비	525,308	-	525,308	
	성과급	성과급	30,000	-	30,000	
	사업운영경비	안산시차세대위원회 등 2개 사업	17,000	-	17,000	
상 록 청소년 수련관	소 계		908,580	1,972,020	△1,063,440	
	인력운영비	-	-	1,327,022	△1,327,022	
	기본경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경비, 시설비 등	711,580	509,998	201,582	
	성과급	-	-	30,000	△30,000	
	사업운영경비	별이빛나는밤에 등 9개 사업	197,000	105,000	92,000	
단 원 청소년 수련관	소 계		336,660	0	336,660	
	인력운영비	-	-	-	-	
	기본경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경비 등	231,660	-	231,660	
	성과급	-	-	-	-	
	사업운영경비	별빛달빛 놀이터 등 9개 사업	105,000	-	105,000	
일 동 청소년 문화의집	소 계	-	44,000	-	44,000	
	인력운영비	-	-	-	-	
	기본경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경비 등	34,837	-	34,837	
	성과급	-	-		-	
	사업운영경비	일동청소년 놀이마당 등 8개 사업	9,163	-	9,163	
사 동 청소년 문화의집	소 계		38,000	-	38,000	
	인력운영비	-	-	-	-	
	기본경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경비 등	29,680	-	29,680	
	성과급	-	-	-	-	
	사업운영경비	마을정원만들기(가드너 체험) 등 5개 사업	8,320	-	8,320	

3. 검토의견

○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음.

※ 공공기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말함.

○ 첫째,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발전기금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6조에서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출연이 가능하며, 담보 제공능력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출연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은「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200억 원 조성시까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재육성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제20조에서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넷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출연금은「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제9조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원은 안산시가 출연한 출연금과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금으로 하고, 수련관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중 일부를 수련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8. 9. 28. 제출되어 10. 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문화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의 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대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취약계층의 정의 추가 (안 제2조)

○ 어린이의 정의 추가 (안 제2조)

○ 노인의 정의 추가 (안 제2조)

○ 장애인의 정의 추가 (안 제2조)

○ 안전용품 보급 대상 및 범위를 안전취약계층으로 구체화 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일괄된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 설립목적, 주요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등은 조례에 명시하고,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 포함하여 간결한 형식을 갖추어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비용추계에 있어 현재보다 출연금이 100% 이상 증가되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재검토 되어 비용 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고,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관장 등 직원 채용 시 자격기준은 상향하여 투명한 절차에 의거 전문가가 채용되어 안산시 청소년 재단이 조직 인원만 확대된 재단이 아닌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일관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8. 9. 28. 제출되어 10. 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별 현행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안 제1조 ~ 제2조)

○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안 별표 1)

○ 수련시설의 사업(안 제4조)

○ 수련시설의 운영 및 운영비 지원(안 제5조 ~ 제6조)

○ 수련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일(안 제7조, 안 별표 2)

○ 수련시설 사용신청 및 이용의 제한(안 제8조 ~ 제9조)

○ 수련시설 사용료 징수 및 반환(안 제10조 ~ 제11조, 안 별표 3)

3.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시설의 종류별 현행 조례인 "안산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안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 운영재원 등과 이용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수련시설의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상위법인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위배됨이 없이 입법내용의 절차적 요건 및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8. 9. 28. 제출되어 10. 1.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가출 청소년의 조기발견을 통한 범죄 및 일탈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심리 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수탁자:(사)한국청소년세상경기지부]의 위탁계약이 2018. 12월말 종료됨에 따라,

○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안산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1. ~ 2021. 12. 31. (3년)

○ 장　　소 :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35, 제일프라자 501~502호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운영인력 : 10명 (시설장 1, 팀장 1, 직원 8)

※ 단기쉼터 종사자 배치기준 : 8명(시설장1, 보호·상담원5, 행정원1, 취사원1) ☞ 야간근무자 2명 인건비는 도비 지원사업임.

○ 운영예산 : 474백만원 [국비 183, 도비 51, 시비 240] ☞ 2018년 예산 기준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및 사업일체

-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 가출청소년 상담·선도·수련활동
- 가출청소년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청소년 가출예방 활동 및 거리 아웃리치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심사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등의 위탁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6조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쉼터는 시설의 관리운영 사무와 함께 가출청소년의 상담·치료 및 자립·활동 등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무로 해당분야의 전문적

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 「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자격을 갖춘 전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14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남자단기 청소년 쉼터"의 위탁 계약이 금년 12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제1항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복지시설은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민간위탁)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 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5조(민간위탁의 사무)에 시장의 소관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중,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안산시 남자단기청소년 쉼터"도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포함 한다고 볼수 있고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해서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안산시 남자단기청소년 쉼터"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